BNK 부산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2339 심의일자 2026.10.27
유효기일 2026.11.01 ~ 2027.10.31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마이플랜퇴직연금정기예금
▶ 상품특징 :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금을 특정금전신탁 퇴직연금계약으로 적립받아 원리금 보장형 연금자산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기예금

2 거래 조건

☞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6.11.01 현재, 단위 : 연, 세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상품유형	▣ 정기예금
가입금액	▣ 1 원 이상
계약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6 개월 ~ 60 개월 (연, 월, 일 단위) ▣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 36 개월 ~ 60 개월 (연, 월, 일 단위)
거래방법	▣ 신규 : 영업점, 인터넷뱅킹 ▣ 해지 : 영업점, 인터넷뱅킹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시 이자를 지급) ▣ 자동재예치 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원금 및 이자 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 · 출금 이체 등 잔액 변동 불가
기본이율	가입(계약)기간 / 기본이율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연 2.10%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연 2.25%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연 1.90% 36개월 이상 / 연 1.90%
만기이자 산출근거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일 단위 이자계산 산식] 신규금액 X 약정이율 X 약정일수/365 (1년제 기준)

중도해지이율 및 산출근거

▣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예금주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함이 원칙이나 만기일 전 예금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또는 재예치일에 영업점에 고시된 중도해지이율 산식에 의거 산출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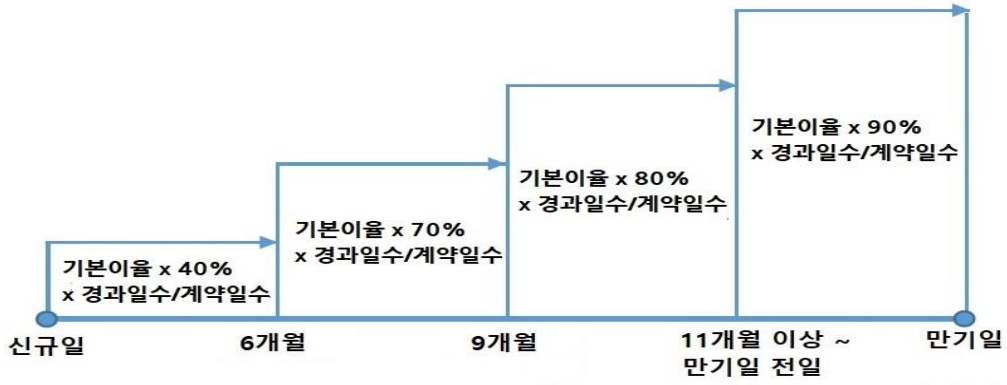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 (단, 최저이율은 0.01%)

▣ 긴급 자금수요 등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정기예금 중도해지이자율에 비해 회전식 정기예금이 유리할 수 있음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디폴트옵션형 퇴직연금 정기예금)	
가입일 이후 ~ 만기일 이전	일반 중도해지	약정이율 x 90% x 경과일수/계약일수
	특별 중도해지	가입당시 약정이율 (단, 약정이율은 경과(예치)일수에 해당하는 가입당시 일반퇴직연금 정기예금의 기본이율을 사용)

예치기간	중도해지이율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6개월 미만	기본이율 x 40% x 경과일수/계약일수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기본이율 x 70% x 경과일수/계약일수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기본이율 x 80% x 경과일수/계약일수
11개월 이상 ~ 만기일 전일	기본이율 x 90% x 경과일수/계약일수

(중도해지 이율 계산(일반 퇴직연금 경우)예시)



※ 위 그림은 적용율, 중도해지개월수, 계약일수 등에 따른 중도해지이율을 보기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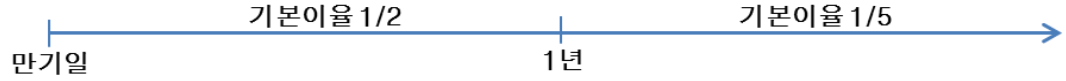
▣ 중도해지이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됩니다(나머지 절사)

▣ 중도해지금액은 원단위까지 적용됩니다(나머지 절사)

▣ 위 내용에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인정하는 아래의 (1)~(10)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예금주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고시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단,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1 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11) 및 (12)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예금가입일 또는 재예치일 당시 약정이율(가산금리 포함)을 적용합니다.

(1) 가입자의 퇴직급여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4)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6)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7)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8) 가입플랜 변경을 위해 해지하는 경우. 단, 해지와 동시에 해지원리금 이상으로 이 예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사업장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0)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11)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사유 발생 시 (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4 및 제13조의6에 따른 사전지정 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 이 예금의 만기 이전에 특별 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 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최종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고시된 이 예금의 이율을 의미합니다. 1. 1년 미만 : 이 예금의 6개월제 약정이율 2. 1년 이상 ~ 2년 미만 : 이 예금의 1년제 약정이율 3. 2년 이상 ~ 3년 미만 : 이 예금의 2년제 약정이율 4. 3년 이상 ~ 4년 미만 : 이 예금의 3년제 약정이율 5. 4년 이상 ~ 5년 미만 : 이 예금의 4년제 약정이율 6. 5년 : 이 예금의 5년제 약정이율
만기후 이율 및 산출근거	▣ 만기후 1년 이내 :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이율의 1/2 ▣ 만기후 1년 초과 : 지급일 당시 가입기간별 일반정기예금 월이자지급식 기본이율의 1/5 
연계 · 제휴 서비스 내용	▣ 해당사항 없음
무통장거래	▣ 이 예금은 통장발행이 불가합니다.
계약의 해지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전문을 통하여 매도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 가능합니다. ▣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 (단, 계약기간 1개월의 경우 만기일 전일까지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로 적용)

휴면예금 및 출연	▣ 예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 소비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 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해당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서면 등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양도	▣ 이 예금의 양도는 불가합니다.	
질권설정	▣ 이 예금의 질권설정은 불가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예치	**가 능**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 이 예금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당초 약정된 이자를 원금에 합산하여 당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만기일에 자동으로 재예치됩니다. (단, 당초 가입기간이 350 일,360 일로 계약한 고객은 재예치시 1 년으로 계약기간이 변경됩니다) – 사용자가 예금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재예치 의사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재예치되지 않으며, 별도 의사 표시에 따라 처분합니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형 퇴직연금 (IRP)** –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1 조 3 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됩니다. – 디폴트옵션형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 ▣ **재예치 기준일** – 이 예금의 만기일을 재예치일로 하고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첫 영업일을 재예치일로 하며, 만기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말일을 재예치일로 합니다.

분할인출	가 능	▣ 이 예금은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적립금운용을 위하여 이 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1.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2.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3. 퇴직연금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납부를 위한 경우 ▣ 만기일전에 분할해지를 하는 경우 분할해지 금액에 대한 이자는 중도해지와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세제혜택	불 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예금자보호여부	해 당(DC/IRP)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비해당(DB)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3 유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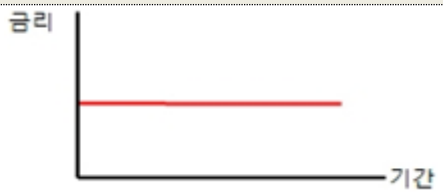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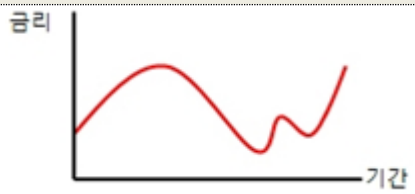
▶ 만기전 해지할 경우 약정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은행으로부터 계약체결을 권유받거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BNK부산은행 개인고객부에서 개발 및 관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부산은행 고객센터(1588-6200)**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busanbank.co.kr)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형 정기적금**은 금리상승기에 약정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반면, **금리 하락기**에는 **약정금리 인하로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운용형태		

특 징	▣ 예금 가입시 결정된 금리가 예금 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 일정주기(3,6개월 등) 마다 예금 기준 금리의 변동에 따라 예금 금리가 변동
장 점	▣ **시장금리 하락기**에 이자율 하락 없음	▣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수익이 증가
단 점	▣ **시장금리 상승기**에 이자율 상승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수익 하락으로 고정금리보다 불리

※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 어	내 용
압 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 · 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 연	▣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BNK 부산은행
www.busanbank.co.kr